

2. 로트가 201대 이상인 경우 시험원동기 2대

안 제29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- ① 제작자는 대기규칙 제70조제2항에 따른 검사를 위하여 제27조에 따라 시험을 실시한 때에는 제 28조에 따라 불합격된 경우에만 그 결과를 국립환경과학원에 지체 없이 보고하여야 한다.

별지 제13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개정한다.

부칙

제1조(시행일) 이 규정은 2019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9-2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「2023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31일

환 경 부 장 관 1. 2023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장기 재활용목표량

대 상	2023년도
27개 품목 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3)	8.60 kg/인

2. 행정사항

- 이 고시는 2023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9-3호

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 제16조제1항에 따라 「2019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」을 다음과 같이 결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31일

환 경 부 장 관

1. 2019년도 전기·전자제품 인구 1인당 재활용목표량

대 상	2019년도
27개 품목 (「전기·전자제품 및 자동차의 자원순환에 관한 법률」 시행령 별표3)	6.52 kg/인

2. 행정사항

- 이 고시는 2019년 12월 31일까지 효력을 가진다.

●환경부고시제2019-8호

「국가균형발전특별법 시행령」 제38조제1항에 따라 「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」(환경부 고시 제2018-158호, 2018.10.5.)을 다음과 같이 일부개정·고시합니다.

2018년 12월 31일

환 경 부 장 관

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용자금 지원조건 일부개정